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14년 12월 1일

나. 회부일자 : 2014년 12월 2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며,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나.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 규정 마련

(안 제4조, 제5조, 제13조, 제14조)

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 위원회 설치(안 제6조, 제7조)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현행 조례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입주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의 여건에 맞도록 조문을 현실화하고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은(제17조부터 제32조까지) 개정조례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재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제13조(연구개발사업 지원), 제14조(재단에 대한 지원) 등 재단 지원에 대한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 지원 근거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등의 설립 및 지원), 제12조(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에 따라 지원이 가능함.
- 입법예고('14.10.20.~11.9.)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현행 조례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현실에 맞추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 지원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